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매수등),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,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

피 고 인 [REDACTED]

검 사 [REDACTED]

변 호 인 변호사 조효동(국선)

판 결 선 고 [REDACTED]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피고인에게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.